

2019년도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5. 8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 - 심의위원 : 전용준(분과위원장), 박성호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안건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1건(안건번호 제2019-30474호~30573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최근 상영관에서 개봉한 영화 콘텐츠를 비롯하여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방송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영상 콘텐츠 및 방송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인데, 이들 영상저작물이 불법 복제 전송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B 위원 : 근래 영화와 TV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송으로 시정 권고 가결함.
- C 위원 :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사건으로서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기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으므로,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

2019년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5. 14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